

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2003. 12.

제 출 자 : 김제시장

의 안	2003
번호	-84

1. 개정이유

- 행정자치부로부터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 기구 승인 되고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 신설 승인
-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한시기구 연장 승인
 - 당 초 : 2001. 11. 12 ~ 2003. 12. 31
 - 변 경 : 2004. 01. 01 ~ 2006. 12. 31
- 김제시립도서관 금구분관 신설

3. 참고사항

-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 신설
[도행정12200-3602(2003. 12. 10)호]
-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 한시기구 연장 승인
[도행정 12200-3535(2003. 12. 04)호]

김제시조례 제 호

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4조제3항 제21호 내지 제27호를 삭제한다

제4장제16조(소관사무) 제7호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

가. 벽골제진시관 운영관리종합계획 수립 시행

나. 벽골제문화재 및 유물의 보호·보존관리

다. 벽골제 사적 대외홍보 및 관광관리

라. 벽골제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시설물관리

마. 아리랑문학관 자료의 수집·전시 및 관람업무

바.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

사. 그밖의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

김제시조례 제389호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한다.

[별표 2]의 사업소명 시립도서관 만경분관란 다음에 금구분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업소명		위 치
시립도서관	금구분관	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178-11

[별표 2]의 사업소명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란 다음에 벽골제·아리랑 문학관사업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업소명	위 치
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	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119-1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김제시조례제389호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4. 1. 1 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조례의 개정) 김제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란 다음에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 무 소	소 재 지
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	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119-1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4조(실·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·보좌기관의 설치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(생략)</p> <p>1. ~ 20.(생략)</p> <p>21.벽골제전시관 운영관리종합계획 수립 시행</p> <p>22.벽골제유물 수집·연구·학예·홍보· 보관·전시·유적조사</p> <p>23.벽골제문화재 및 유물의 보호·보존관리</p> <p>24.벽골제 사적 대외홍보 및 관광관리</p> <p>25.입장권 판매 및 입장료 수입금 관리</p> <p>26.벽골제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시설물관리</p> <p>27.벽골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제16조(소관사무)(생략)</p> <p>1. ~ 7.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신 설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신 설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신 설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신 설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신 설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신 설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신 설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신 설></p>	<p>4조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0.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삭 제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삭 제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삭 제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삭 제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삭 제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삭 제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삭 제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<삭 제></p> <p>제16조(소관사무)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7.(현행과 같음)</p> <p>8.벽골제·아리랑문학관사업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벽골제전시관 운영관리종합계획 수립 시행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벽골제문화재 및 유물의 보호·보존관리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벽골제 사적 대외홍보 및 관광관리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벽골제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시설물관리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아리랑문학관 자료의 수집·전시 및 관람업무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사.그밖의 벽골제·아리랑문학관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</p>	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	행		개		정		안	
[별표2]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(제14조관련)				별표2]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(제14조관련)					
사업소명		위		사업소명		위		치	
시	만경분관	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536-24		시	만경분관	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536-24			
	도서관	〈신 설〉	〈신 설〉		도서관	금구분관	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178-11		
노인종합복지 타운관리사업소		김제시 하동 404-17		〈현행과 같음〉		〈현행과 같음〉			
〈신 설〉		〈신 설〉		벽골제·아리랑 문학관사업소		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119-1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<01.11.12 조례389> 제2조(경과조치)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는 2003. 12. 31까지 한시 운영하며, 폐지되는 벽골제관리사업소는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 만료시 상시기구로 환원한다.</p>		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<01.11.12 조례389> 제2조(경과조치)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는 2006. 12. 31까지 한시 운영한다</p>					
김제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									
[별표]					[별표]				
사무소		소재지			사무소		소재지		
노인종합복지 타운관리사업소 〈신 설〉		김제시 하동 404-17 〈신 설〉			(현행과 같음)		(현행과 같음)		
만 경 읍		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335-3			벽골제·아리랑 문학관사업소 (현행과 같음)		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119-1 (현행과 같음)		